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2월 26일 (수) · 주간 제9호 · 통권 제1716호 ·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 통과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5/ 2/ 26 통권 1716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12월 결산법인,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통합된 기업 거버넌스(Integrted coporate governance)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
-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탈세 세무조사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단순대행 아니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 매입 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전체 거래 수취금액이 공급가액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인력조달 업무형태와 특성 및 소득과세방법〉

개념, 구분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용역대가
독립성	종속적 고용관계	종속 단기고용	독립성	독립성	독립성
법인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법인+개인
계속성	계속	계속 (3개월 미만)	계속	일시 우발	계속
복수소득	거의 단일	여러 현장, 복수	다수 상대방	다수	다수
과세자료	연말정산	매월 지급명세	매월 지급명세	매월 지급명세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원가입증	약 30% 이내	하루당 15만원	실비대응	법정비용 60%	자체회계기장
원천징수	근로소득징수	일용소득징수	3.3%	8.8%	사업비용 등
세금계산	일반세율	단일세율	일반세율 (단일세율 원천징수)	소득율 40% 세율 20% → 최종 8.8%	실제기장 대로임
종합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	종합합산	열거는 분리과세	종합합산
기장	표준공제	단순계산	복식기장	법정경비 60% 등	실제회계기록
소득자료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세금계산서 주고받기 (매출 세금계산서)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16호 / 주간 9호 2025. 2. 26.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인력조달 업무형태와 특성 및 소득과세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통합된 기업 거버넌스(Integrted coporate governance)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국민주택채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컨테이너 취득시 자산처리 - 우수사원 포상 내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 여부 -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7
매일절세재무요점	-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 비상수출대책 주요 내용	9 10
직장인Survival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③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환급 가능함 (기준법규법인-33, 2024.09.26)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기준법규기본-207, 2024.06.21)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115만 곳… 내달 31일까지 납부	14
마케팅 Tax consulting	단순대행 아니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 매입 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전체 거래 수취금액이 공급가액임	12
세무정보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 -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탈세 세무조사	15 34 39 43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통합된 기업 거버넌스 (Integrted coporate governance)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의 이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글로벌 인도주의 확산, 금융 및 경제 위기는 기업의 가치 창출의 성격과 리스크, 사회경제적 기대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거버넌스와 기업의 책임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도전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경영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따라 기업 모든 분야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데이터 보호를 비롯한 데이터 스튜어드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Integrated Corporate Governance: A Practical Guide to Stakeholder Capitalism for Boards of Directors, World Economic Forum, June, 2020 p.6.

환경, 사회, 거버넌스, 데이터 스튜어드십(이하, "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의 리스크와 기회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경쟁력, 어떤 경우에는 생존에 잠재적 영향을 미친다. 즉 기후변화, 천연자원의 희소성, 인권, 포용과 다양성,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글로벌 자원과 경제적 갈등과 봉쇄 등에 따른 회복력 등의 이슈에 대한 대처 역량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리스크 관리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기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종전의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위한 이익 창출에서 장기적인 가치창출과 기업과 상호 의존적인 글로벌 경제 및 환경, 사회적인 영향((impact)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전략에 대한 역할과 의미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기업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경제 및 환경, 사회를 모두 포함한)을 기업의 핵심적 비즈니스에 통합하여 기업 목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전략과 운영에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거버넌스의 원칙인 대리인 이론, 책무성, 수탁책임은 기업 자체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거버넌스는 기업의 재무 및 사회 전체에 성과를 주도하고 조율하여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업의 정당성과 책무성을 확신하게 된다. 위와 같은 조율을 위해서는 거버넌스는 기업의 목적과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기후변화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점에서 경영계획과 실행, 모니터링을 감독(oversee)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상기한 영역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어야 한다*.

* World Economic Forum(2020), p.21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 :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종전의 주주가치 극대화로부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측정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CEO와 투자자, 규제당국, 행동주의투자기관들은 주주(sharehoders)뿐만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all key stakeholders) 요구를 조화시킨 명시적이고 측정가능한 약속을 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중요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의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는 공시된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공시할 뿐 아니라 단기적 가치에 추가하여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전략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무와 운영의 리스크와 기회에 중점을 둔 기존의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 모형의 특성이 잠식되어 가고 있다. 반면 기업의 책임과 시민에 기초한 이해관계자 모형은 "환경, 사회, 거버버넌스 등" 리스크와 기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 사회, 거버버넌스 등"의 요소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현재 많은 경우 분화되었고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업의 핵심 전략과 운영, 기업의 거버넌스에 보다 통합적으로 내재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통합된 기업 거버넌스(Integrted coporate governance)

이사회와 CEO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원칙과 목표를 실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이사회는 전통적인 주주 중시의 사고에 의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칸막이 (segmentation) 사고를 초월하여야 한다. 통합된 기업거버넌스(Integrted coporate governance)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통합된 기업 거버넌스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요소를 기존 주주 중시(shareholder primacy) 관점에서 비재무적 현안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총체적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넓은 이해(wider stakeholder interrests)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mindset)에서 출발한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 데이터 스튜어드십을 조직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략, 자원배분,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보고정책과 프로세스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윤리적이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이사회가 다루어야 할 중대한 경영 요소이다.

통합된 기업 거버넌스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새로운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공유된 가치 창출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감독과 거버넌스 역량, 그리고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경우 이를 위해 중요한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 World Economic Forum(2020), p.7.

#1. 장기적인 가치창출 동인(driver)과 전략과 자원배분이 일관성을 갖도록 조율.
#2. 중요한 "환경, 사회, 거버번스 등" 요소를 조직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내재화.
#3. 위기와 시스템 체계에 영향을 주는 쇼크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와 회복력을 강화.
#4. 글로벌 기업의 경영환경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한 협력적 관계를 강화.
#5. 통합된 방식으로 재무보고와 중요한 "환경, 사회, 거버번스 등"리스크와 기회를 보고하기 위한 관리 체계와 시스템의 구축 운영 준비.
#6. 이사회의 조직, 이사회 구성 등을 "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편 운영.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4일 (금)	2월 17일 (월)	2월 18일 (화)	2월 19일 (수)	2월 20일 (목)
미 달 러	(USD)	1450.50	1443.30	1441.10	1443.90	1440.60
일 본 엔	(JPY)	948.47	947.79	950.97	949.68	952.12
영 국 파 운 드	(GBP)	1822.55	1816.54	1818.74	1823.00	1812.92
캐 나 다 달 러	(CAD)	1021.95	1017.70	1015.79	1017.33	1011.69
홍 콩 달 러	(HKD)	186.25	185.42	185.23	185.72	185.23
중 국 원	(CNH)	198.76	198.15	198.72	198.44	197.86
유 로 화	(EUR)	1517.80	1514.02	1510.63	1508.30	1501.61
호 주 달 러	(AUD)	915.99	916.71	915.46	917.09	914.13
싱 가 폴 달 러	(SGD)	1079.68	1077.41	1074.33	1075.73	1073.15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5.59	325.43	325.01	324.80	324.35

국민주택채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Q 회사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1천3백만원 어치 매입해야 하는데, 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지요?

1안) 채권을 매입하고 10년 만기뒤에 이자를 받고 매각하는 방안(이자율 1.3%) : 계정과목은 '투자유가증권'

2안)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각해서 매각비용만 부담하여 비용회계처리하는 방안(비용 1,200,000원 발생) : 계정과목은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

A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만기보유할 것인지 즉시 매각할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귀사가 제시한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또한 만기보유 여부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취득시 자산처리

Q 컨테이너 구축물 여부 및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1.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식 컨테이너 여러 동 구입 후 기초공사 없이 , H빔으로 연결하여 사용중입니다(총 취득가 6,600만원)
   당사는 이동식컨테이너(1동)은 비품으로 자산처리 하고 있으나, 토지, 토목공사 없이 철구조물 H빔으로 연결해서 사용했을때, 구축물이 아닌 비품으로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덧붙여 컨테이너 수리비(처마, 도어락, 칸막이 등) 발생시, 컨테이너 취득가액에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A

1.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컨테이너는 비품 등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토지에 정착시켜 창고나 숙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품이라기 보다는 구축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구축물로 반영된 컨테이너의 수리비용의 경우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취득원가)로 반영하고, 자산의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등의 수리비는 수익적지출(당기비용)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수사원 포상 내역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 여부

Q 당사 복리후생 제도 중 분기별 1명씩 우수사원을 선발하여 포상으로 제주도 항공권과 호텔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회사에서 직접 예약(약정된 호텔)하고 항공권은 개인이 선결제 시 개인에게 송금 또는 회사에서 항공권 직접 예약)
이럴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A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연말정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시

Q 1월31일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안했습니다.
본인만 공제해서 연말정산 신고시 징수세액이 나오며 직원에게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회사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꼭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3월 연말정산 신고시 연말정산 미제출 직원분만 제외를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도 제외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A 연말기준 전직원에 대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서류를 미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에게 회수하여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귀사가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업자마다 고객확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있게 마련이다. 보통 고객유치를 위해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 재화의 사업상 증여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는 공급대가가 수반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급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즉,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증정하는 "사업상의 증여"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은 재화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수증자(사은품이나 경품수령자)는 세금부담없이 사은품이나 경품을 사용소비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증자로부터 재화의 대가는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수증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사용·소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판매촉진상 재화의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을 별도로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가 자기예산으로 납부하고,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의 부대비용으로 하여 비용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등의 간주공급 등의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사업상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되는 재화(사은품이나 경품 등)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예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사은품 등에 대해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품 등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 - 356, 2000. 2. 9).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서 사업상의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광고선전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은품이나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은품이나 경품은 수령자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보통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은품의 경우 계속적 거래, 구매, 판매량 등의 마일리지 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이미 판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소득 46011 - 21044, 2000. 7. 26). 그러나 사은품이라도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제도 46012 - 12338, 2001. 7. 24).

역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득 46011 - 21019, 2000. 7. 22).

즉,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반면에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은품이나 추첨을 통한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으로서 사업자가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구 분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각종 권리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화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기본 공제	- 국내 상장주식 · 주식형 펀드 · ETF 등 수익 5000만원 - 해외 주식형 펀드 · 채권 · 주가연계증권 · 비상장주식 등 수익 250만원
세율	과세표준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水 비상수출대책 주요 내용

관세 대응 (미국관세 피해기업 대상)	•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컨설팅, 물류 · 통관 지원 등)
	•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피해 발생 중소 · 중견기업은 2025년 6월까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적용
	• 유턴기업 법인세 · 소득세 · 관세 감면 확대
무역 금융	• 무역금융 366조원, 중소(60) · 중견기업(40) · 무역보험 100조원 공급
	• 2025년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험료·보증료 일괄 50% 할인
	• 원자재 수입 기업 수입자금 대출보증 4조원 지원, 수출 중소 · 중견기업 환변동보험 3조원 공급, 고환율 피해 수출 · 입 중소기업에 1.5조원 정책자금(자금 · 보증) 지원
대체시장 진출	• 글로벌사우스 지역 수출지원기관(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 거점 5개소 신설 · 9개소 기능 강화
	• 글로벌사우스 우량수입자 대상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 3배 확대
수출기업 애로해소	• 마케팅 1.2조원 지원, 수출기업 8,000개사 144회 전시 · 상담회 지원, 신흥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 193 → 300개사로 확대
	• 선박이 부족한 노선(서남아, 중남미 등)에 물류 경색 발생 시 임시선박 투입 지원
	• 해외인증 취득 절차 간소화 위해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200→210건으로 확대
	• 수출전담인력 부족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수출업무 대행 전문 무역상사 50개사 추가 지정

木 창업도시(스타트업 시티) 도약 위한 제도개선 방안

지방투자시 세제 혜택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기업 지방 이전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지역벤처펀드 결성촉진, 투자기회 확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 출입국 및 생활 장벽 완화	외국인투자촉진법

결국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7가지 ③

4.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일에 대한 진지한 자세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리더라면 누구나 따르는 법이다.

요즘처럼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는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5.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톨스토이는 "겸허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그런데 어째서 겸허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손아랫사람이라도 장점을 보면 적극 배우려 한다. 겸손함이 몸에 배어 부하직원들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대하며, 상사든 동료든 누구에게나 차별하는 마음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제5수준의 리더십을 습득하라"고 말한 바 있다. "잘되면 창밖을 보고 잘되지 않으면 거울을 보라"는 것인데, 이 말은 즉 잘되면 주변사람들 덕분이고 잘되지 않으면 자신의 책임이니 반성하라는 뜻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 성공해도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다.

최 신 판 례 예 규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환급 가능함

기준법규법인-33, 2024.09.26

▌질 의

- 중간예납기간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를 적용한 법인이 정기신고 시 결손금 감소로 기환급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 경정으로 인해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결손금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5.19. 법률 제17254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4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의 환급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은 후,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신고 시 전체 사업연도 결손금 감소로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납부한 경우로서, 정기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에 의해 쟁점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결손금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것임

Marketing Tax consulting

단순대행 아니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 매입 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전체 거래 수취금액이 공급가액임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사전법규부가-235, 2024.06.17

▌질 의

-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회 신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서면법규법인-2195, 2024.02.29

❙질 의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 2. 14.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제1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임

<제2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단체가 그 정관 등에서 수익 분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실제 수익 분배가 이뤄진 바 없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함

기준법규기본-207, 2024.06.21

❙질 의

•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부동산 압류처분을 받은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체납된 국세를 포함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해당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위 부동산 압류처분의 필수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를 하는 경우

  - (질의1)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승인 취소를 해야한다면,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회 신

당초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대하여 관할 과세관청이 해당 주택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 분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주택조합이 사업실패로 인해 조합의 수익을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7, 2004.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115만 곳… 내달 31일까지 납부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중간예납 때 신고하지 않은 비과세?감면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에 나섰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4만 개 늘어난 115만 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의무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동안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남의 논문 짜깁기로 연구개발 공제신청… 국세청, 지난해 270억원 추징

국세청은 20일 가짜 연구와 허위 인건비 등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사후검증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의 27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실적이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는 국세청 본부와 지방국세청 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했고, 2023년 한 해 364개 기업에서 116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한 결과 69개 기업이 적발,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소관 부처에서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지 않았거나, 인정 취소된 178개 기업에 대해서 30억원을 추징했다.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출연금까지 자체 지출인 것처럼 꾸민 48개 기업에서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선의의 연구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위해 공제 전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 · 소득세 신고 전 미리 심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하였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고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한편,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검증을 통해 부당공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 국세청, 2025.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2.18.(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❶ 국가전략기술에'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추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

❷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중견 20% 중소 30%

❸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연구개발시설 포함)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❹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29.12.31.)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31.12.31.)

❺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24·'25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7	12		
신성장·원천기술	3	8	14	+	10
국가전략기술	15	15	25		

❻ 수도권 중기업 규모 출판업 영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감면율 10%)

❼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❽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❾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시행일 ~ '25.6.30.)

❿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법인세법

❶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23.12.31.→'26.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❶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❷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❸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종합부동산세법

❶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부가가치세법

❶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 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

* 통신판매중개업체, 결제대행업체 등

국세기본법

❶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

관세법

❶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참 고 주요 개정내용 상세본

조세특례제한법

1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조특법 §7①)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ㅇ (감면율) 5~30%
<table>
<tr><th rowspan="2">본점
소재지</th><th rowspan="2">업 종</th><th colspan="2">감면율(%)</th></tr>
<tr><th>소기업</th><th>중기업</th></tr>
<tr><td rowspan="2">수도권</td><td>▪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td><td>10</td><td>0</td></tr>
<tr><td>▪ 제조업 등</td><td>20</td><td>0</td></tr>
</table></td><td>□ 수도권 출판업*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ㅇ (좌 동)
ㅇ 수도권에서 출판업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감면율 상향 : 0 → 10%
<table>
<tr><th rowspan="2">본점
소재지</th><th rowspan="2">업 종</th><th colspan="2">감면율(%)</th></tr>
<tr><th>소기업</th><th>중기업</th></tr>
<tr><td>수도권</td><td>▪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td><td>10</td><td>0</td></tr>
</table></td></tr>
</table>

지방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30	15

○ (적용기한) ’25.12.31.

	▪ 제조업 등	20	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방	▪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출판업 등	30	15

○ (좌 동)

<개정이유> 출판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조특법 §10)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분야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바이오의약품 ○ 미래형 이동수단 <추 가>	□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 ○ (좌 동) ○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 인공지능

<개정이유>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3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ㅇ (적용기한) ’27.12.31.	ㅇ ’29.12.31. - 반도체 분야는 ’31.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	ㅇ ’29.12.31.

공제율(%)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10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4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24)

현 행

□ 통합투자세액공제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분야 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반도체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연구개발시설 전체)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일반 연구개발시설)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 '23년 투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3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6	6→10	12→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1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추 가>

○ '24·'25년 투자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8	12→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4→10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25년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계없이 10%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년 투자분) '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년 투자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보완(조특법 §29의6)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적용요건) 성과보상기금에 3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가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신 설>	□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에 대해 소득세 감면 적용 ㅇ (좌 동) -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ㅇ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요건 합리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8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 §29의8·§30)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❶ (성별) 여성	<삭 제>
❷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❷ 1년 이상 근무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❸ (퇴직사유)	❸ 퇴직사유 추가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추 가> ❹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	- (좌 동) - 가족돌봄 ❹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기취업자감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9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 목적의 출자법인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출자법인 ㅇ (특례내용)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해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ㅇ (과세이연 요건) 출자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피출자법인 지원 - ❶출자법인이 자산 양도 후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영구채 전환 포함) - ❷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하거나 대여 후 출자전환하고, 자산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 종료 및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 ❶출자법인이 대여 후 출자전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❷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기업 재무구조개선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	ㅇ (좌 동)

단체 ○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 (기부·공제한도) 2,000만원	○ (좌 동)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 ○ (좌 동)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시행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1 지방이전지원세제 적용 제외대상 명확화(조특법 §63)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외대상 ○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 제외대상 명확화 ○ 동일한 공장에 대해 지난 10년 이내에 공장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1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❶ + ❷ ❶ 2년 이상 보유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❷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 ○ (감면율)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3년 만기 채권: 30%, 5년 만기 채권: 40%) ○ (적용기한) ‘26.12.31.	□ 감면율 상향 ○ (좌 동) ○ (감면율) 현금보상: 15% 채권보상 : 20% (3년 만기 채권 : 35%, 5년 만기 채권 : 45%) ○ (좌 동)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①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6의3①)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ㅇ (공제적용 소득) ❶ 또는 ❷
❶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❷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ㅇ (소득공제 한도)
<table>
<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d>□ 소득공제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table>
<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6천만원</td><td>500만원</td></tr>
<tr><td>6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25.1.1.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

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조특법 §86의3④)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ㅇ (공제적용 소득) ❶ 또는 ❷
❶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❷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ㅇ (소득공제 한도)
<table>
<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d>□ 소득공제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table>
<tr><th>사업(근로)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r>
<tr><td>4천만원~6천만원</td><td>500만원</td></tr>
<tr><td>6천만원~1억원</td><td>400만원</td></tr>
<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r>
</table></td></tr>
</table>

□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수령하는 공제금·환급금에 대한 과세 ㅇ 폐업 등 공제사유로 지급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 과세 ㅇ 공제사유 발생 전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 과세 - 단, 아래 사유로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과세 ① 천재·지변, ② 해외이주 ③ 3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④ 중기중앙회 해산 <추 가>	□ 해약환급금에 대한 퇴직소득 과세 사유 추가 ㅇ (좌 동) ⑤ 10년 이상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 경영악화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행시기> ’25.7.1. 이후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대상)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 ㅇ (특례내용) 출자전환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 * 출자전환한 주식등의 시가와 대여금등의 장부가액 간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적용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❶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대여금을 출자전환 - ❷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 - ❸해외건설자회사가 최근 10년 동안 계속해서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ㅇ (손금한도) 매 사업연도마다 출자전환 차액상당액의 10%를 한도*로 최대 10개 사업연도기간 동안 손금산입 *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 ㅇ (사후관리) ❶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❷출자전환 이후 순자산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3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 ㅇ (특례내용)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이스포츠대회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16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14.12.31.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차를 '24.12.31. 기준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신규 구입·등록 □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70% 감면*(경감한도 100만원) * 개별소비세 감면시 교육세·부가가치세(개소세분)도 감면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한도) ㅇ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 노후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② 노후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 (적용기한) 시행일 ~ '25.6.30.

<개정이유> 친환경 소비 확대 유도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시행일 전 반출·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감면

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1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한도 : 1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6개 감면 ○ 5개 과세기간 감면* 합계액 한도 : 2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등에 대한 11개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 1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2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 5개 과세기간 감면 한도 조정 -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협의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협의매수 등* : 3억원 * 비자발적 양도에 대한 3개 감면 - 그 외 : 현행 유지

<개정이유>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지원
<적용시기> 법 공포일(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법 시행일 이전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미합산)

법인세법

①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 '23.12.31.까지	□ 유예기간 연장 ○ (좌 동) ○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ㅇ (좌 동)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 친족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ㅇ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⑧)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 수탁재산 관련 내용 ○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간 이체내용	□ 제출 대상 확대
<추 가>	○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종부법 §20조의2)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대상 추가
○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좌 동)
❶ 1세대 1주택자	❶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❷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❹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 (좌 동)
○ (특례내용)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1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법 §75①)

현 행	개 정 안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ㅇ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❶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❷ ❶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①(9) <추 가> ㅇ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좌 동) ❸ ❶~❷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1 우수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국기법 §84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ㅇ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세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의 지급대상, 선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2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국기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ㅇ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 - ❶「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❷동일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제외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ㅇ (사전통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최소 30일)을 부여할 필요 ㅇ (부과액) 이행기한 도과일로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백만원 이내 ㅇ (감경·면제조항) 이행노력, 불이행 사유 등을 고려하여 부과액의 50% 이내 감경 또는 면제 가능

<개정이유> 국세행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3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대상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24)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ㅇ (대상) 상속인 ㅇ (승계 범위) 상속재산 - ❶, ❷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❶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❷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 조문 명확화 ㅇ 상속인 (상속포기자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4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관련 조문 명확화(국기법 §39)

현 행	개 정 안
□ 제2차 납세의무 ○ (대상)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조합원 ○ (한도) 과점주주 · 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출자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주주등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출자액비율(손익분배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추 가>	□ 한도 산출 방식 명확화 ○ (좌 동) ○ (좌 동) -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 부족금액에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관세법

1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관세법 §9, §38의5 등)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28.1.1 시행 예정) ○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대상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신고한 물품 ○ (성실납세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성실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 (성실신고·납부 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성실납세신고 시 부여	□ 제도 폐지 (종전 납세신고제도 유지) ※ 기존 납세신고 제도 ① (대상자) 모든 납세자 ②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③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④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개정이유> 국회 심의 결과 반영

2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관세법 §89⑥(1))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항공기 부분품 등 관세 감면
ㅇ (중소기업) 면제
ㅇ (대·중견기업) ‘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감축
<table>
<tr><th>구 분</th><th>‘24</th><th>‘25</th><th>‘26</th><th>‘27</th><th>‘28</th><th>‘29</th></tr>
<tr><td>TCA*물품</td><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d>-</td></tr>
<tr><td>비대상</td><td>40</td><td>20</td><td>-</td><td>-</td><td>-</td><td>-</td></tr>
</table></td><td>□ 관세 면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대·중견기업) 관세 면제 1년 연장
<table>
<tr><th>구 분</th><th>‘25</th><th>‘26</th><th>‘27</th><th>‘28</th><th>‘29</th><th>‘30</th></tr>
<tr><td>TCA물품</td><td>100</td><td>80</td><td>60</td><td>40</td><td>20</td><td>-</td></tr>
<tr><td>비대상</td><td>20</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 민간항공기교역협정 : 항공기 부품 등 교역 자유화를 위한 WTO 부속 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으로 미국·EU·일본 등 33개국 가입</td></tr>
</table>

<개정이유> 항공산업 국제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2)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단,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자)	□ 제출기관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신고수리 여부 불문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및 국세와의 정합성 제고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 국세청, 2025. 2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 12. 31.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 ('24년 기준)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

○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 국세청은 '21.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기반의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 ❶ 일용근로소득('21. 7.시행) ❷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21. 7.) ❸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21. 11.) ❹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24. 1.)

○ 이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 (예시) '25.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5. 2. 28.까지 제출

|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 |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편의 기능 |

구분	기능 설명
제출화면 간소화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
미리채움 서비스	매월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전월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변동사항만 간편하게 수정·제출
소득구분 따라하기	헷갈리는 소득구분(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을 대화형 안내에 따라 예 또는 아니요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소득 종류를 확인
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제출 형식, 자료 내용의 오류를 원클릭 검증하여 제출 시간 단축

*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 자주하는 질문 FAQ

Q1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A.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대상입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Q2	'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5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됩니다.

Q5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 2 - 제출화면 간소화·미리채움 서비스

1 제출화면 간소화

○ (개요) 불필요한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개편

○ (효과) 입력화면 통합으로 【이전단계】, 【다음단계】로 화면이동을 하지 않아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제출시간 단축

2 미리채움 서비스

○ (개요) 소득자 정보,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 내용을 “미리채움(pre-filled)“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효과) 동일한 소득정보를 매월 입력하는 불편 해소,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전 방지, 소득자 수가 많지 않고 매월 지급액이 유사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제출편의 향상

참고 3 - 소득구분 따라하기·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3 소득구분 따라하기

○ (개요) 소득자료 종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형 안내화면에서 예/아니요 순차적으로 선택하여 소득종류를 확인하고 바로 입력하기 연계

○ (효과) 헷갈리는 소득구분(상용근로, 일용근로, 사업, 기타)을 주어진 질문 클릭만으로 해결

(1단계)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 클릭

(2단계) 질문에 따라 예/아니요 클릭하여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

4 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 (개요) 형식검증, 내용검증 순으로 각각 클릭·검증하던 2단계 검증단계를 ‘원클릭’ 검증으로 통합

○ (효과) ‘검증하기’ 버튼을 한번만 클릭하면 모든 검증이 수행되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감소

참고 4 - 서식 비교(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개정 2023. 12. 29.> (3쪽 중 제1쪽)

간 이 지 급 명 세 서

(거 주 자 의 기 타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❶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상호 (법인명,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⑮번 합계)

⑥ 지급연도		⑦ 지급월 (해당 월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일련번호	⑧ 귀속연도	⑨ 귀속월	⑩ 소득구분	⑪ 소득자 성명(상호)	⑫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⑬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⑭ 지급건수	⑮ 지급액	⑯ 필요경비	⑰ 소득금액	⑱ 세율	⑲ 소득세	⑳ 지방소득세	㉑ 계 (⑲+⑳)
1														
2														
3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서식(4))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4)] <개정 2023. 3. 20.> (5쪽 중 제1쪽)

귀속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번호	

❶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간 총지급 건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세	⑪ 지방소득세	⑫ 농어촌특별세	⑬ 계

❷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번호	⑭ 소득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국인	⑱ 지급연도	⑲ 지급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세소득	㉒ 필요경비	㉓ 소득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소득세	㉗ 농어촌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

- 국세청, 2025. 2

□ (신고개요)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③②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17.(월)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100의14)

□ (신고대상)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은 115만여 개로서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방법)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99.7%가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

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①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과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신고를 통해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 또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은 3.31.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금액 및 기한>

분할납부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기한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6.2.까지)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4.30.까지)

* (예)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3.31.까지 1,000만원 납부, 6.2.까지 7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3.31.까지 2,500만원 납부, 4.30.까지 2,500만원 납부

□ (기타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제도와 신고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고에 필요한 수익·비용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라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 1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연결납세제도 개요

□ (성실신고확인제도)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법인세법 §60의2)

<적용대상 법인>

❶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❷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❸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150만원 한도)

○ (가 산 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외

□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법인세법 §76의8)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 (적용방법) 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 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

*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신고납부)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참고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에게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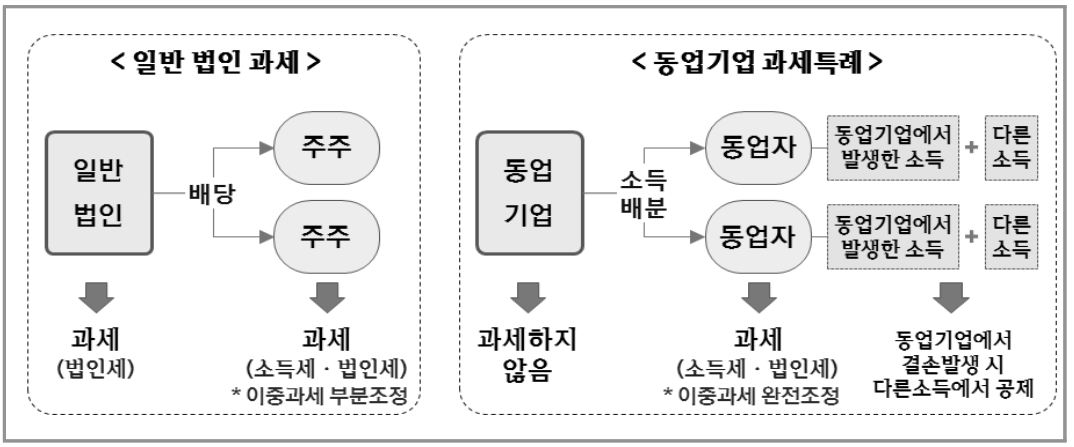

○ (적용대상)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익명조합과 합명·합자회사, 법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등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고방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

* 이번 신고의 경우 3.15.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3.17.(월)까지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접속 → 지급명세서·자료·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법인세 관련 자료제출 →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내역조회'

참고 3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변칙적·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 국세청, 2025. 2

1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거래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세금 회피는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추진내용

□ 이번 세무조사는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이며 선정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법증여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2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
3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4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29명)
5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유형1]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합니다.

[유형2]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

□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형3]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

□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된 바,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유형4]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로 세금 탈루한 혐의자 (29명)

□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유형5]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를 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합니다.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

3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공정한 세정의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세무조사 선정사례

사례 1 [고가주택] 부친으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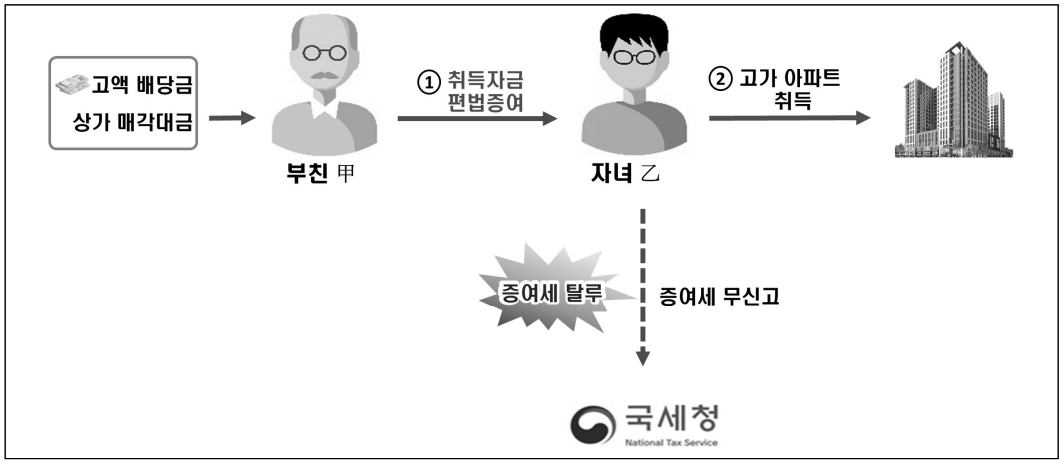

□ 주요혐의

○ 자녀 乙은 시세가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등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함

- 한편 부친 甲은 자녀 乙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얼마 전에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사용처가 불명확함
- 자녀 乙의 소득·재산 상태와 부친의 자금 여력에 비추어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음

□ 조사방향

○ 乙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하여 부친으로부터의 편법증여 여부, 소득 신고누락 여부 등 조사

사례 2 [가장매매] **다주택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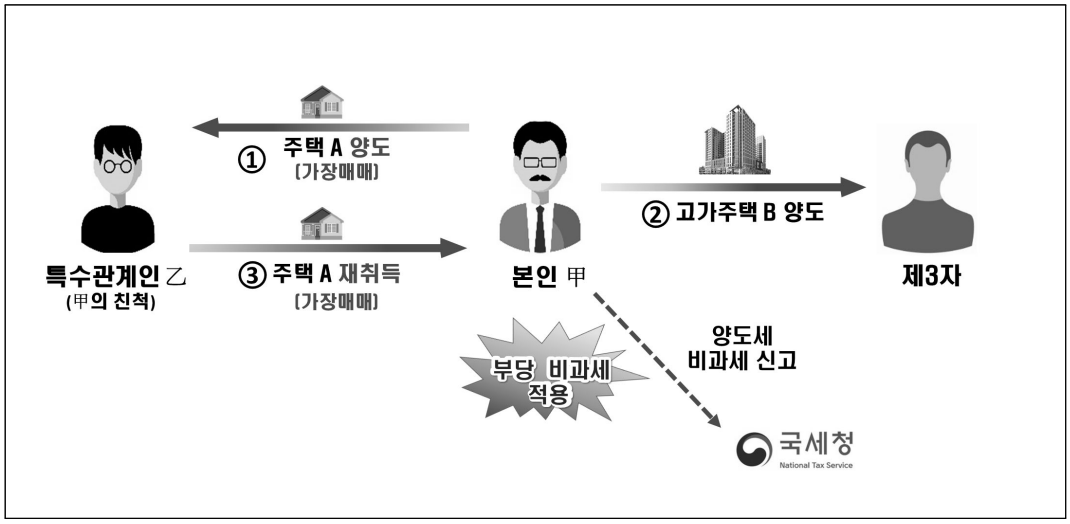

□ 주요혐의

○ 2주택자(주택A·B)인 甲은 서울 소재 고가주택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먼저 지방 소재 주택 A를 친척 乙에게 가장매매함

- 이어 甲은 고가주택 B를 제3자에게 ○○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친척 乙에게 이전해 놓았던 주택 A를 다시 돌려받음
- 甲은 이러한 수법을 통해 고가주택 B를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것처럼 위장하여 부당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은 혐의가 있음

□ 조사방향

○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 사실을 확인, 거래 실질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받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 3 [부실법인] 부실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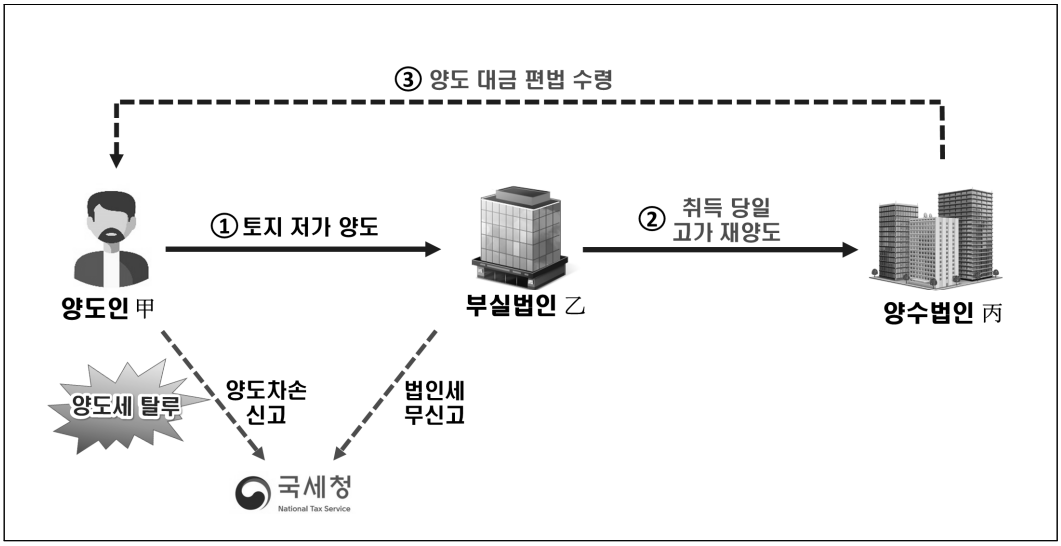

□ 주요혐의

○ 양도인 甲은 십년 이상 보유해 온 토지를 사실상 휴·폐업 상태에 있던 부실법인 乙에게 취득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

- 부실법인 乙은 동일 날짜에 다른 법인 丙에게 이 토지를 ○○억 원에 재양도하여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무신고함
- 甲은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를 위장하고 양도대금을 편법 수령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방향

○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여 부실법인과의 형식적 거래를 부인, 거래 실질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 4 [직거래]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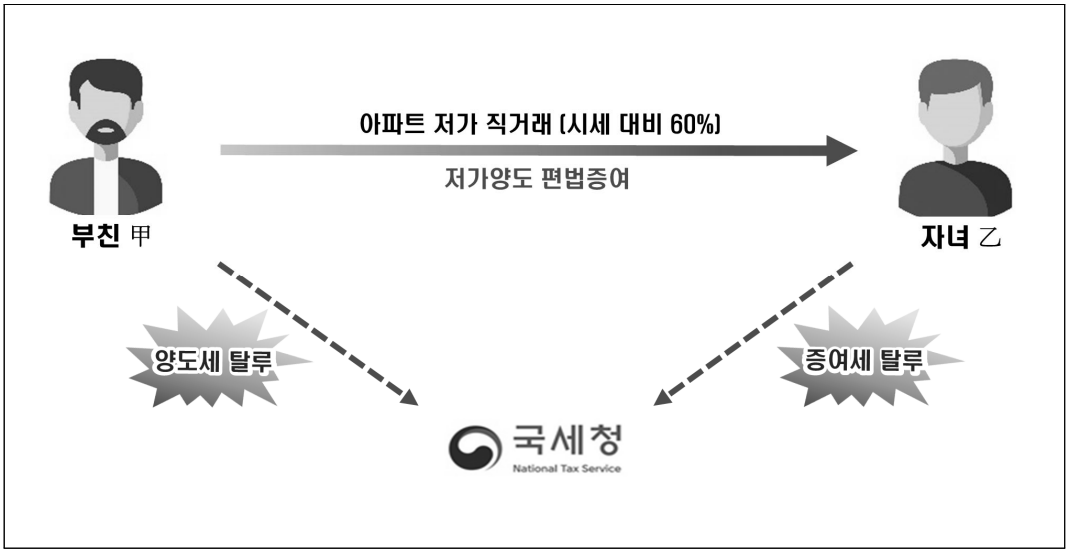

□ 주요혐의

○ 부친 甲은 본인이 소유하던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로 자녀 乙에게 ○억 원에 양도함

- 한편 비슷한 시기 해당 단지의 동일한 평형 아파트가 ○○억 원에 거래되는 등 위 양도가액은 시세대비 크게 낮은(60% 수준) 것으로 확인됨
- 부친 甲은 자녀 乙과의 직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자녀 乙은 이 거래와 관련해 증여세 신고한 내역이 없어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음

□ 조사방향

○ 부친 甲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과세하고, 자녀 乙에 대해서는 저가양수로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